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 건설, 통신시설 설치 및 그래픽 처리 장치 등 장비의 사업화를 위한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인허가등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 및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인허가등 간주 등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 비수도권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신축·확장하는 경우 등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를

면제하고, 재생에너지 또는 LNG(비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됨)로 생산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건축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항만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비수도권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II. 검토의견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을 위한 복합 인허가의 일괄처리 관련 (안 제18조)

- 안 제18조제1항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복합 인허가등¹⁾의 일괄처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안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안 제18조(복합 인허가등의 일괄처리) ① (생략)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허가등 처리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요청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일정 기간 내에 인허가등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등을 한 것으로 본다(이른바 “타임아웃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신속하고 원활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허가등 절차 신속 개시 요청 및 일정 기간 도과에 따라 다른 기관의 권한인 인허가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행정기관 직무범위의 범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조²⁾ 등에 비추어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위원회³⁾의 심의·의결을 거친 구역에 한정하여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⁴⁾를 구

2)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국가전략산업위원회)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

정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참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처리 절차 신속 개시 요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5)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수정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함.

게 해당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산업통상부 10. 보건복지부 11. 기후에너지환경부 12. 고용노동부

13. 중소벤처기업부 14. 기획예산처 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8조(복합 인허가등의 일괄처리) ⑥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괄처리 신청의 검토가 완료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괄처리 접수 사실 및 일괄처리 신청서등을 통보하고 인허가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u> ⑨ 제7항의 기간(제8항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관계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에게 인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u>인허가등을 한 것으로 본다.</u>	제18조(인허가등의 일괄처리)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괄처리 신청의 검토가 완료된 경우 「<u>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u>」 제7조에 따른 <u>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u> 관계기관의 장에게 <u>일괄처리 신청의</u> 접수 사실 및 일괄처리 신청서등을 통보하고 인허가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의 기간(제8항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u>이하 이 조에서 같다</u>) 내에 관계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에게 인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u>인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u>

2. 그 외의 사항

- 그 밖의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법집행을 위한 위임입법 근거를 추가⁶⁾하고, 부칙에 전담기관 관련 준비행위 및 일반적 적용례를 추가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관계 기관 의견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정안 중 전력망 우선설치(안 제12조), 전력거래 특례(안 제19조의2),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특구 내 전력공급시설 직접 설치(안 제23조 및 제25조) 등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등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 제19조의2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거래 특례가 도입되는 경우 전체 전력시장·계통 운영상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전문위원 박 혜 진)

6) 안 제13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과 관련한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및 지원 대상 명확화를 위하여 관련 시설 및 부지의 범위를 행정입법(과학기술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